

제413회국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경제재정소위원회)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24년2월21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52)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5)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3)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0)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6)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0)
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상정된 안건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7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8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8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8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8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8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8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52) 8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5) 8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273) 8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0) 9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1036)	9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158)	13
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020)	13
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721)	13
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4826)	13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18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18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18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18

(14시59분 개의)

○소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 배석자는 발언 전에 소속, 지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김포시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통과돼서 처리가 됐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접경지역 인구 50만 이상 예타 면제하는 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안건들을 논의한다는 것은 경제재정소위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타 면제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동안 가덕도신공항법이라든지 달빛철도법이라든지 사실 여러 지역의 형평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예타 면제를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께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신 내용에 보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여당 원내대표

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전 국민들 앞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그토록 무관심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조차 없는 건지 본 위원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안소위의 기본적인 운영은 합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까지 이해를 했고 또 그런 결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타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실은 합의를 해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형식상으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내용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또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만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에 관련되는 일반법인 동시에 기본법입니다. 거기에 개별 사업에 관련돼서 하나하나씩 넣기 시작하면 예타 면제든 또는 저희가.....

○김주영 위원 자, 말씀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소위원장 유동수 잠깐만요.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김주영 위원님 제 말씀을 좀 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법규정에 보면 예컨대 정부청사라든지 또는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쪽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물론 속기에 들

어가 있는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달빛철도라든지 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라든지 또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예타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가재정법,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것은 예타 면제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 있을 뿐더러 그 규정 자체에 대한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다른 항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조금 뒤에 정부에서는……

오늘 우리 당의,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오전 10시에 했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시를 했습니다. 잠깐 읽겠습니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당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교통 편의와 또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해결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타 면제 관련되는 사항도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또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 예타 면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 국무회의라든지 또는 다른 회의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국가재정법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원내대표께서도 저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타 면제가 굳이 형식상으로 법체계상으로도 안 맞는 사항이고 또 절차상으로도 안 맞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당에서도 기본방향을, 아까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 편의를 위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서 또 어려운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 관련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말씀……

○김주영 위원 잠깐 저도……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마는 지난번 회의 때 저희들이 10시부터 기다렸습니다. 10시부터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을 위해서, 특정 의원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해 줄 수 없다는 그런 폄하적인 발언 자체가 사실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내용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김포라고 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분명히 접경 지역 인구 50만 이상, 그렇게 따져 보면 김포와 파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투입되지 않은 철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지역에도, 그동안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사실은 많은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도로도 제대로 안 났었고 철도도 제대로 안 들어왔었고. 그런데 인구 50만을 넘어서 지금 70만…… 옛날 검단하고 같은 지역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김포를 거쳐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전무하고.

제가 기재위에서 김포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발언을 했습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콤팩트시티가 들어선다고 하면 올림픽대로는 더 포화상태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없고.

연일 언론에서 실신자가 나왔다는 게 계속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사람이 죽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그런 겁니까? 저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교통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 특정지역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법에 그 조항이 하나 더 들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명확하게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추경호 장관께서도 예타 면제에 대해서 또 교통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안다고 이야기를 하셨었고 예타 면제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 넘어오면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법안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접경지역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인구 50만이 넘어가는 그런 데는 철도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예타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접경지역 인구 50만이 들어간다고 해서, 철도사업 들어간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인데……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께서 지난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 못하고 통과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재정소위에서 통과된 때가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김주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할 답변이랄까 또 실현가능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임위를, 아직 통과되지 못했지만 저는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김주영 위원님은 매일매일 그 지역에서 그런 위험을 직시하고 있는 시민들을 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법체계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를 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급한 법은 와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정부가 원하는 건 국회에 와서 계속 조르고,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국민의 불편 사항을 목도하면서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매일 견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전혀 답변 안 하시고.

그래서 저는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이것은 조금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병환 차관님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가 그동안에 부족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김포골드라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소홀했거나 대책을 방기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풀기가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법안에 내용을 넣는 것도 아마 5호선 연장이라든지 새로운 철도를 놓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서 법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노선 확정이라는 부분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예타가 면제가 되든 예타를 하든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그동안 법안 논의되고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노선 자체가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한다 만다, 예타를 면제한다 만다라고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국토부가 도저히 못 기다려서 중재안을 냈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인천과 김포 쪽에서 아마 그 중재안을 놓고 논의 중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 김포골드라인의 문제를 어떻게든 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걸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의 입법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체계에 너무 흐트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좀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는 쪽의 어떤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정부로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타 면제 등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포함해서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찾을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십시오,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요. 오늘 정식 안건이 아닌데 회의 전에도 여러 차례 간사 간 협의의 그리고 또 정부와 해당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간에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오늘 안건을, 회의가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주영 위원** 저는 이게 지역구 의원의 민원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자체가 좀 문제라고 보고요.

법안 보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인데 그 내용에 김포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접경지역 인구 50만’ 이건 어느 지역이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지자체 간 합의라는 그 조건으로 해서 계속 미뤄 왔습니다. 대광위는 분명히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중재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그것을 지금까지 방기해 왔다는 거예요. 특정지역만 그렇게 지자체 간 합의가 어려운 부분들을 합의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중재안을 발표했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빨리 필요하다는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국토부장관이 제2한강신도시, 콤팩트시티를 발표하면서 2030년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6년 남았습니다. 6년 남았는데, 그러면 분양하고 입주하고 이런 기간들 따진다 그러더라도 교통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경제재정소위, 아까 류성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때 분명히 이것은 보이콧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보이콧을 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를 하게 된 거지 그냥 단독 처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회의가 열린다고 명확하게 공지가 돼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양기대 위원** 양기대 위원입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 오랫동안 우리 소위에서 있어 왔고 또 지난번에 경위야 어쨌든 소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마침 오늘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법도 통과시키면서 또 국민의힘과 현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지혜를 발휘해서 이것을 빨리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공이냐, 여당의 공이냐, 정부의 공이냐, 대통령의 공이냐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라도 빨리 그 방향을 서로 잡아서 다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지금과 같이 계속 이렇게 된다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법안도 해야 하는데 계속 갈등의 관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빨리 찾아서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류성걸 위원** 저는 양기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의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소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 이미 전체회의로, 소위에서 의결돼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계시는 23일 날 전체회의에서 말씀 한번 하시지요.

소위에서 이미 처리가 됐던 사항을 왜 상임위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을 안 하느냐를 소위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실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김주영 위원** 아니, 그것은……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끝내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가 명확하게 예타 면제 포함해서 한마디로 딱 해 주시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 원내대표도, 당 대표 아닙니까. 당 대표의 연설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아까 정부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는 걸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회의에서, 나중에 23일 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대출 위원** 이 논의가 자꾸 진행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냥 시간……

○**소위원장 유동수** 아니, 김주영 위원님 듣고 그다음에 하시지요, 발언 먼저 신청했으니까.

○**김주영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류성걸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은 명확하게 간사 간에 합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오늘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되는 문제들입니다.

○**류성걸 위원** 논의할……

○**김주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요. 본 위원도 정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면, 존경하는 양기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뭔가 그런 답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정부가 꼭 필요할 때마다 ‘이것은 급하다, 저것은 급하다’, 안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급하니까 저희들도 이렇게까지, 지금 4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답을 안 내놓기 때문에, 그사이에 정부는 뭐든지 ‘이것도 급하다, 저것도 급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국회의원들을 법안 처리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늘 답을 못 내면 부처 간에 협의해서 다음 회의라도 답을 주면 회의는 순조롭게 정리가 되겠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박대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지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논의되고 있는 이 내용은 우리 경제재정소위의 권한을 벗어난 논의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 가지고 전체회의로 넘어간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 소위에서 거꾸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런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안건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기진행된 법안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서 경제재정소위에서 법안을 논의하자 그래서 지금 20개 안건이 올라와 있고요.

특히 지금 이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단군 이래 최대 성과라고 얘기하는 47조 원의 방산 수주 이것을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느냐 아니면 무산될 위기에 빠지느냐라는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서,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방산업체 그리고 관련 종사원들은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그런 기로에서 우리 경제재정소위의 법안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안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이런 일을 보면 도대체 그 방산업체와 종사자들,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소위원장 유동수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의견 좀 얘기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영교 위원 여당 아니십니까, 여당? 여당이고, 지금 그렇게 방산업체 종사자 이야기……

○박대출 위원 아니, 여당은……

○서영교 위원 아니, 제가 우선 얘기하니까요, 제 시간이니까.

아주 중요해요. 수출입은행의 한도를 늘리는 것은 국감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야기했고 다 주장한 내용이고 여야가 같이하는 법안이 맞아요. 이렇게 중요한 게 있을 때 그동안 또 뭐 하고 가만있다가 지금 와서 급하니까 빨리 내놓자고 하는 의도는 뭐며, 중요하니까 빨리 제 때제 때 회의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골드라인의 김포, 김포 서울에 편입하자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골드라인의 문제점이 이렇게 부각되고 여당의 원내대표가 오늘 원내에서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박대출 위원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어디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이런 것 없습니다.

저는 이 기재위 와서, 사실은 김주영 위원님이 이 얘기를 한 번도 안 한 적이, 못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 내용을 항상 들었고요. 이것은 김주영 위원님을 떠나서 언제나 보도가 나고 여기저기서 터지는 아주 큰 문제예요.

그리고 차관님, 저희 지역에도 예타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왜 여기만 예타 면제시켜 달라 그러니까? 내 것도 면제시켜 주세요’ 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것은 그래도 절차 밟으면서 가도 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보통 상황이 아니잖아요, 접경지역에.

그래서 한 의원이 중심이 돼서 이야기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여당의 원내대표도 오늘…… 그러면 여당의 원내대표는 또 사탕발림으로 얘기한 겁니까? 원내대표 연설에까지 얘기하고 국무회의에서도 얘기하고 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런 이야기 할 때라도 같이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중요한데 왜 여당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만 중요합니까? 지금 빨리 수출입은행 것도 통과시켜야 되고 이것도 같이 올려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특히 박대출 위원님 같은 분이 같이 가자고 해 주고……

우리도 아주 피가 말라요, 우리 지역.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25년 됐어요. 그런데 기다려요. 기다리고 가지만 여기는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걸……

기재부가 어차피 이것 해야 될 걸요. 대통령 관심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으면 좋겠어요, 답을. 그런데 답도 안 가지고 오고…… 우리 당 위원들 4명이나 왔어요. 5명 왔어, 이 어려운 시기에.

○박대출 위원 답을 가지고 왔어요.

○서영교 위원 다 어려운 시기에 다섯 명이나 왔어요.

○소위원장 유동수 잠깐만요.

○박대출 위원 답을 가지고 왔다고요.

○서영교 위원 여당 두 분 나오서 가지고……

○소위원장 유동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유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92)

○소위원장 유동수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주아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 1쪽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에 대해서 국유재산 사용료 면제 특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지난 23년 11월 소위에서 특례 인정 여부에 대해서, 특례를 신설하되 존속 기한 설정 원칙에 따라 존속 기한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하

신 바 있습니다.

3쪽의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시다시피 존속 기한이 29년 말로 되어 있는 것을 28년 말로 수정하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심항공교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람이나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그리고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관리·운영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도심형항공기는 도심에서 운항하기에 적합한 기기로 국토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티포트는 도심형항공기 이륙·착륙·항행을 위해서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 김병환 기획재정부제1차관님께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3페이지의 수정안 내용에 정부는 동의합니다.

존속 기한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용료 감면의 경우에 5년을 시한으로 설정하는 저희 나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28년 12월 31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29년이나 28년이나 뭐 차이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5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국유재산 활용, 특히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 사용료 감면 입법을 하는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법 개정되고 5년을 주는 것, 그러니까 부여를 하고 5년간 사용료 감면을 주는 걸로 지금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28년 말로 하는 게 전체 체계를 맞추는 데에는 나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서일준 의원안이 29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28년으로 해서 통과시키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런 말씀입니다.

○서영교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여기 개정안에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8조인데 왜 18조가 16조로 바뀌나요? 인용을 잘못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아닙니다. 법 제정안에는 18조였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 제정안을 심사하면서 좀 수정이 있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소위 위원님들 간 합의가 되었으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잠정 의결하였다가 추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22)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83)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8)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27)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123345)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2516)

(16시22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6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심사자료 4쪽입니다.

개정안 5건의 주요내용을 각각 말씀드리면, 먼저 경미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제재금 납부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공공기관 결산서의 국회제출기한을 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 등입니다.

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소위에서 일차 논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합의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제재금 신설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미한 계약질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금전납부로 갈음하는 제재금 신설에 대해서, 국가계약법상 과징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다만 ‘제재금’ 용어를

사용하는 법률이 없고 과징금으로 하기에는 행정청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므로 이를 공공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회의에서 ‘제재금’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의미가 되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 번, 결산서의 제출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이 없고 국회제출기한을 7월 30일에서 3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수사기관 등의 수사개시·종료 통보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사건 외에 성범죄 및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도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인데요. 음주측정 불응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 등 수사·조사하는 경우에도 모두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쪽 이하에 대안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재금’ 용어는 ‘일정 금액을 내는 경우’로 풀어서 쓰는 방법으로 저희가 조문을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동안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6페이지의 대안 부분에 대해서 전부 동의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박대출 위원 사전에 협의가 좀 됐고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의 없는 것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예.

이 안건도 소위 위원님들 간 합의가 되었으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잠정 의결하였다가 추후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52)

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885)

10.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273)

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9940)

1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21036)

(16시25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총 5건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1쪽입니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유해성분 자료제출·정보공개를 하는 것,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1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담배사업법에 대해서도 지난 소위에서 논의하여 내용에 대해서 잠정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담배의 범위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담배의 범위를 현행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에서 연초 전체를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할지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연초 전체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 신설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 없이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소매인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소매인 명의대여자 제재수단으로 소매인 지정취소까지 할지 지정취소와 함께 추가적인 형벌도 부과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셔서 소매인 명의대여 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소매인 지정취소 요건에 소매인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까지 합의하셨습니다. 형벌은 미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셨습니다.

다음, 유해성분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에 대해서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고 담배의 정의는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 식약처, 기재부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미 제정이 되어 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담배의 제조·판매를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에도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에 대한 기본원칙은 명시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배의 유해성분 자료제출 및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개정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의 조문을 대안에 반영하지 않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이 대안에 대해서 이들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실에 모두 연락을 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13쪽부터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담배의 정의, 소매인의 지정, 17조 소매인 지정취소 그리고 24조의2를 신설하여 유해성분 검사 및 공개를 명시하는 것 이런 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잘 들었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이 법안도 전문위원실과 소위 논의 결과를 반영해서 합의된 조문이 13페이지에 대안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양기대 위원** 양기대 위원입니다.

저도 지난번 논의 때부터 죽 지켜왔고 오늘 이렇게 최종안을 의결하려고 하는 시점인데 저희들이 사실 전문지식이 많지 않거든요. 아니, 저희들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정부가 동의한 이런 내용들에 시장,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스크린이 된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시장에서 다 동의를 한 거고요.

참고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미 세법에서, 이 내용이 세법이 개정되니까 반영돼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담배사업법에서 정의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이견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영향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양기대 위원 차관님 말 믿고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유동수 예, 류성걸 위원님.

○류성걸 위원 차관님, 좀 전에 세법 관련 얘기했는데 지금 담배 관련되는 법이 뭐뭐가 있지요? 담배사업법이 기본이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담배사업법이 있고 지방세법에도 부과할 게 있고 개별소비세법에서도 담배 관련 과세대상, 이런 과세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담배사업법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지방세법 그다음에 개별소비세법,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법은 이미 개정이 돼서 이것을 반영했다는 데 그 세법이라는 게 개별소비세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별소비세법도 있고 부가가치세법도 있고요. 담배소비세법도 있고 지방교육세법…… 세법은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지금 세금 관련해서.

○류성걸 위원 법 이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저희들한테도 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전체 다 해서 주시고, 나중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전부 다 배포를 해 주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논의가 많이 됐던 합성니코틴은 순수하게 화학적인 합성니코틴만 이야기하고 담배라는, 그러니까 연초에서 뽑아냈던 모든 관련되는 사항은 다 담배사업법 적용이 된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됩니다.

○류성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순수한 합성니코틴 부분만 제외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저도 질문으로……

○소위원장 유동수 예,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서영교 위원 합성니코틴으로 만드는 담배가 있는 거지요, 전자담배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서영교 위원 그것은 담배가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담배사업법상은 담배가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사업법상 담배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법안이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그것은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이것을 판매해서 내는 세금은 담배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거랑 다른 유형으로 적용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법에서는 현재 담배사업법에서 넣고자 하는 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서 세금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영교 위원 합성니코틴으로 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니요, 순수한 합성니코틴은 현재도 세법상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고, 담배사업법이 이렇게 개정되더라도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또 결정을 해야 될 과제가 남게 됩니다.

○박대출 위원 미안합니다.

지금은 현행 담배법을 준용해서 과세가 안 되고 있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유동수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과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담배도 아니고 담배사업법상 세제의 대상도 아니고, 그러면 합성니코틴은 피우면 무슨 해가 되나요? 니코틴과 똑같은가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러면 이것은 미성년자가 사도 되는 건가요? 미성년자가 이것을 사도 되고 피워도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다른 쪽에 무슨 규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습니다. 담배와 관련된 법령상으로는 그게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은 안 받게 되는 상황이고요.

유해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

에 이게 유해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과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논쟁이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아직 과세대상으로 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서영교 위원 담배는 유해한가요? 그러니까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담배가 유해하나 안 하나? 유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우고, 이것을 통해서 폐암이나 이런 게 왔다고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하고 이것으로 어떻게든 보상도 치르게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합성니코틴도 유해하나 안 하나라고 관련해서, 그러면 합성니코틴으로 된 담배를 중학생 애가 피우고 있어. 사실은 그것은 하나의 기호품으로 봐야 할까요? 제가 잘 모르면서도 아직 우리가…… 합성니코틴에 의한 담배를 아이들이 피우는데 딸기 맛, 레몬 맛, 포도 맛, 아주 냄새도 좋고 주변에 냄새도 좋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현장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게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합성니코틴은 담배 성분에도 안 들어가고 담뱃세를 내는 그 대상도 안 되고 그러면 유해한지 아닌지도, 사실 이건 우리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 식약처에서 하는지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는지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합성니코틴으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네. 그러면 동네에서 청소년이 피워도 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우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논의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합성니코틴을 원래 담배 영역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합성니코틴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담배 영역으로 만들어서, 원래 연초의 이파리, 줄기에서 나오는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영역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또 미성년자가 근접하면 안 되는 영역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합성니코틴이라는데 그렇잖아요, 피우지 못하게 하고 살 수 없게 하고 팔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을 제가 의견으로 남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재부나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나 식약처나 이런 쪽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 오고, 이게 정부나 우리 국회에

서 할 일이라고 과제로 좀 남기고 싶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치, 적절한 예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아예 배제해 버려 가지고 가상자산의 거래라든지 과세 전부 다 배제한 때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은 과세 쪽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투자자 보호 쪽으로 지금 법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완전히 법률에서 배제해서, 담배사업법에서 배제해서 논의를 아예 안 해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재정소위에서 책임을 방기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이 법을 처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서영교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동안에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세법상 담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이번에 법안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맞추어 줄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합성니코틴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것은 여러 부처가 한번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에서 또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부처들과 함께…… 이것은 연구용역도 좀 해야 됩니다. 유해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경제재정소위가 담배사업법에 대해서 규정을 지금 새로 하는데 현재도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사업법에서 아예 정의를 안 해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책임을 회피한,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한 두 달 정도 있으니까 그사이에 용역을 좀 하시고 해서 정부 측 입장을 명확하게 듣고 용역 결과도 듣고 전문가들 얘기도 좀 듣고 그런 이후에 처리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그때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어차피 시기가 몇 달 차이 나는 거는, 사실은 그게 없는데……

○소위원장 유동수 한 두 달 정도.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다만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 주신 그 논의,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합성니코틴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특히 정부라 함은 기재부만의 입장이 아니라 전체 정부의 입장이어야 될 텐데 두 달 만에 저희들이 통일된 입장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조금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박대출 위원 지금 그것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 볼게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말씀하시지요.

○박대출 위원 한 두 달 이 법 처리가 지연되면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사실은 지금도 세법과 이 법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 조항과 관련해서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큰 문제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다만 법안이 왔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달 안에 정부의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와서 하자고 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한을 맞추기가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안 되면 22대로……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저거는 추후에 따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양기대 위원 아니, 저는 위원장님 안에 동의합니다. 저도 불안해서 그렇고요.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시지요. 관여를 많이 하셨으니까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은 아주 요약정리만 돼 있지, 이 자료를 위원님들도 전부 다 보셨을 것이고 여기에 관계되는 분들도 다 보셨을 건데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리를 해서 콤팩트하게 했는데 지금 합성니코틴 관련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담배로 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도 아직까지 통일된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것을 해서……

○박대출 위원 조금 더 논의하지요.

○양기대 위원 논의합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세법상의 담배의 정의와 범위가 다르고 또 담배사업법이 기본법인데 기본법이 정하지 않는 담배를 사실상 세법에서 지금 현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다음에 합성니코틴은 진짜 순수한 화학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합성니코틴 또는 유사담배, 담배라는 명칭 자체를 담배사업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담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담배사업법에다가……

○소위원장 유동수 합성니코틴으로 집어넣는다는……

○류성걸 위원 아니지요. 연초를 원료를 하지 않는 어떠한 것도 담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한대라고 오히려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만약에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할 때는 담배라는 거에다가 연초를 원료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뭐뭐 뭐 하는 것을 담배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법과 다른 법과 그다음에 기본법이라는 담배사업법하고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맞춰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합성니코틴뿐만 아니라…… 지금은 시중에 보면 니코틴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넣어 가지고 무슨무슨 담배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담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양기대 위원 저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굉장히 좋은 말씀하시고 관련 법도 내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의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미국처럼 미국 법을 따라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측이 입장을 좀 더 확고히 해서 가지고 다음번 논의 때 이 부분을 계속 심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게 이제까지도 사실은 개별소비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는 담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데는 당연

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되는 건데, 담배사업법이라고 하는 기본법하고 세법하고의 괴리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해소한다기 보다는 관련 법체계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을 먼저 빨리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말하여 유사담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유해성을 포함해서 또 어떤 물질까지를 유사담배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니코틴 성분은 같다 하더라도 합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담배사업법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하고의 정합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위해서 처리를 하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지금까지 과세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과세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 정의 때문에? 그런 것은 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은 세법에서도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 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지요.

계속 심의하도록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들은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3158)

14.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020)

1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721)

1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4826)

(16시45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총 4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담배사업은 담배 구비에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매인 지정이라

든지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해결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합성니코틴에 관련되는 사항은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 달이나 또는 몇 달 이렇게 단기에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관련되는 법을 지금 4건이나 이렇게 했고 그사이에 담배의 정의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들어가 있고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 또 이미 관련된 법은 지난번에 복지위와 협의를 해 가지고 했지만 그것하고 같이 맞춰 주기 위해서는 이 법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합성니코틴을 이야기한다면 이 법은 22대가 돼서도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류성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다음 소위에서도 결론이 안 나면 류성걸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16쪽입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이 작년 3월 개정되어 통계법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계 사무 목적 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법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11월 소위에서 심사를 한 바 있고,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조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3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가는 그중에서 1항에 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58조 1항 1호를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19쪽에서 보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의 일부를 제외하는 조문이 있는데요, 여기에 통계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통계의 작성을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게 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법 15조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계법에 승인통계 작성하거나 통계등록부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통계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서 1호, 2호, 3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1호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2호는 승인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한 경우, 3호는 통계등록부를 구축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서 1호나 3호는 인정하더라도 2호의 경우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예비적으로 작성하는 통계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였고, 현행 통계법에도 규정되지 않는 예비통계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하면서 2호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소위에서 통계 작성에 있어 개인정보 확보가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안과 같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반적인 찬성 의견을 주셨고.

20쪽에서 수정의견에 보시는 바와 같이, 2호 승인을 신청하거나 예비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는 삭제하고 그리고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좀 유사한 내용이라서 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요 이것은 34조의2제2항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20조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했을 때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그리고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요.

통지의무 면제의 경우는 각각 세 가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1호에 통지하는 것이 불가

능한 경우, 2호에 통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경우, 3호에 통계작성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중대하게 손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통계 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법 20조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그 범위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린 바 있고, 지난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지의무 면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면제가 필요한 경우를 특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2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에 26쪽부터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인데요. 수정의견으로 특히 2호를 보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고요.

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통지하기 위해서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하여 각 목, 가·나·다·라로 네 가지 경우에 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통계등록부를 구축·운영하거나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는 24조는 행정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4조의2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해서 특례를 두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3호는 일부 자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8쪽은 3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5조, 36조, 37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3항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35조는 개인정보 정보주체에 대해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권리를 두고 있고, 36조는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37조는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5조, 36조, 3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경우를 두고 있는데요. 그 경우를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통계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것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드리면,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저하가 가능한 데이터의 훼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열람이나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규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분리해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소위 심사에서도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를 특정해야지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2쪽부터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는데요.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지금 3항에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는데 3항, 4항, 5항으로 각각 분리하고 내용을 좀 보완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3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좀 보완을 하였고 각호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통계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정정·삭제가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정정·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우는 1호·2호·3호·4호에 각각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거나 총조사를 하는 경우, 지정통계를 위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해서 그 경우는 두 가지로, 통계등록부를 구축하거나 또는 승인통계를 할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33페이지까지 윤영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전체 다 하고 하시면 안 되나요?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럴까요?

○소위원장 유동수 예.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다음 34쪽의 개정안, 조정식 의원님 안은 공표 전 통계에 관한 것입니다.

현 통계법은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관계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쪽에서 보시면, 공표 전 통계를 제공받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27조의2 제2항 2호입니다. 그런데 1호에서 이미 관계기관을 한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상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 물가, 인구, 주택, 문화, 환경 등과 관계된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계기관의 범위가 축소되고 있고요. 시행령에서도 통계작성기관이 제공 필요성이나 활용 계획 등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개정의 실익이 적지 않은가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은 3항인데요. 지금 현재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할 때 제공 방법이나 제공받은 기관명, 담당자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공 사유까지 추가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 사유를 기록한다면 행정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고요.

다음, 39쪽부터는 변재일 의원님 안입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통계 오류에 대한 수정과 공표의무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40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잠깐 제가 검토의견 듣기 전에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예.

○박대출 위원 내용 잘 알겠는데요. 그 전에 검토 주 하면서 통계청에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당장 처리를 안 하면, 해야 될 시급한 게 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소위 논의가 너무 지연이 되면서 제일 급한 수출입은행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이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지금 저희가 개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윤영석 의원님 발의한 개인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개인정보로 활용할 경우에 통지하거나 통지의무를 면제받는 것과 또 개인정보주체가 요구할 때 열람을 허용해야 되느냐, 또 정정·삭제를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계 목적을 위해서는 거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그 조항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죄송합니다, 수석님.

다시 한번 질의할게요.

통계청에서는 이 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한 거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지금 통계조사라든지 연구하는 데 이 법이 통과돼야지 통계청이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단계지요?

○**통계청차장 최연옥**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정보법에서 통계청 예외조항이 빠짐으로써 통계청 업무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 측 의견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수석님 의견을 마저 다 듣고 정부 측 의견을 들겠습니다.

다 말씀하세요, 끝까지.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재일 의원님 안은 40쪽부터 설명드리면, 통계 오류에 대한 수정 공표 의무를 신설하는 것인데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오류를 발견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수정 공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의원님 안은 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43쪽의 가변을 말씀드리면, 통계종사자 처우개선 근거 마련입니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통계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통계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과 통계종사자 임금의 통계작성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의 도달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계종사자의 보수를 통계작성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상의 제약도 있고 수행 업무, 전문성이 상이하다는 점을 볼 때 이 부분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48쪽, 현장조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현행법 26조는 실지조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를 현장조사로 바꾸고 현장조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을 의무화하며 또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하고 관계인의 성실한 조사응답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가 모든 시각에 허용된다면 조사 대상자의 편의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각 제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또 현장출입조사서를 발행하도록 한다면 사전 예고로 통계조사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재 26조 2항을 현장조사의 근거로 한정하고 인터넷조사 등 비대면조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3항은 현장출입조사서 발송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현장 수요에 맞게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통계법 32조에서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5항을 신설해서 성실한 조사응답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이 부분은 용어 정비를 정리하였는데요. 개정안은 통계종사자에 현장조사를 위해서 채용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통계종사자’의 용어를 정의하고 그리고 ‘실지조사’ 용어를 ‘현장조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도 통계종사자에 현장조사를 위해서 채용한 사람이 포함돼 있다는 측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

지조사는 현재 통계청이 수행하고 있는 조사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현장조사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에 따른 실익도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통계법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요, 각 안별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먼저 운영석 의원안은 지난번에 논의가 되면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과 저희 또 전문위원실이 협의를 해서 수정의견으로 그 범위를 좁혀 놓은 겁니다, 그 예외 범위를.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 정부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정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표 전 통계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범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재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공 사유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령에서 제공 사유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도 개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처음에 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이긴 합니다만 정부도 수용이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반영하기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같은 의견으로 조금 수용하기가,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시간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통계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 생각으로는 시급히 반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정부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체 문구를 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계사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해야

된다 그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부 측이 지금 현재 동의한 안대로 이렇게 잠정 의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의결정족수가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안건을 먼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총 6건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은 계속 심사하고 제13항, 제15항, 제16항, 이상 3건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김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김주영 위원님께서 차관님께 한번 질의를 하시고 차관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김주영 위원입니다.

기재부차관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소위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4년 동안 김포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보도가 한두 차례 된 것도 아니고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신이라든지 또 호흡가뽐 이런 것으로 해서 병원에 실려 간 사례도 꽤 많았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예타 면제를 요구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당을 명확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앞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서 예타 면제 방안을 포함해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들 정부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김포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지키는 그런 신속한 방안을 저희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부총리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이 건 관련해서 저도 하나만 추가……

○**소위원장 유동수** 예,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주영 위원님 의견, 지금 김포시민들이 출퇴근 시의 고통 그것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빠른 길을 반드시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것 그런 데 대해서는 아마 여야 간에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빠른 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267)

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3261)

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5108)

20.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26495)

(17시12분)

○**소위원장 유동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총 4건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57쪽입니다.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58쪽에서 심사 경과를 간단히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에서 25조, 30조, 35조 그리고 50조까지 각각 증액하는 안입니다. 시행일은 또 공포한 날 또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방산 수주나 첨단전략 산업 지원을 위해서 2월 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개정 필요 의견을 주셨고, 반면 법 개정의 시급성에 의문이 있고 과도한 현물출자를 개선해야 하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본금의 규모는 수은의 정책금융 공급 여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은이 정책금융 수요를 적기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자본금 규모를 적절히 확대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납입자본금은 14조 7000억입니다. 그리고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법정자본금의 98.5%까지 한도가 소진된 상황입니다.

60쪽입니다.

그래서 법정자본금 여유는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확대를 통해 확보된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특정 산업이나 대기업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출입은행이 여신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일 부분은 수출금융의 적시성이나 정부의 출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의 의견은 61쪽에 간단히 정리하였고요.

62쪽 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수권자본금에 대비해서 납입자본금이 98.5%입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수권자본을 올릴 때를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만 지금 과거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압박해 있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최근에 폴란드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이슈가 됐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 차 있으면 지금 현재 수출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까지도 공급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의 규모를 빨리 입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박대출 위원님.

○박대출 위원 지금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님 안을 비롯해 가지고 4개의 개정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법정자본금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 양기대 의원님 안은 35조 원으로 증액하자는 것이고, 25조 원, 30조 원, 35조 원, 50조 원 이 네 가지 규모의 증액안이 관련 법안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논의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그런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의를 좀 더, 정부 측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부 측에서 보다 유연하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 주셔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가 지연, 논의가 제자리를 건너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도록 의지를 갖고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말씀……

○소위원장 유동수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규모와 관련해서 저희들 정부가 나름 추정을 한 기준으로 봐서는, 당초 한 30조 원 정도까지 수권자본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고 그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설명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지금 입법이 25조부터 50조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정부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양기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기대 위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쭙어보려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아요, 제 관점으로 보면. 이 자본금을 늘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늘릴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수출입은행에서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그때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오늘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길게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를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이게 폴란드 방산 수출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위원도 문제 제기했고 많은 위원님들도 문제 제기했고 또 법안도 발의됐고.

그래서 저는 폴란드 방산 수출의 여러 가지 흐름, 그 뒤의 폴란드의 정국 상황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점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의 지원 역량이 한계에 다다랐다 해 가지고 지금 아우성인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고 또 차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폴란드 방산 수출이라든지 또 대기업이라든지 또 특정 분야라든지 여기를 지원하기 위해 타기팅해서 하는 것같이 국민들한테 비쳐진다면, 또 중소·중견기업한테 비쳐진다면 사실 이것은 또 다른 특혜가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줄 수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차관님께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출입은행과 기재부가 더 좀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오해와 우려가 없도록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도 드렸고 그런 당부의 말씀 드렸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 법정자본금 한도가 올라가면, 얼마로 올리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에서 7년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증자를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물출자하고 현금출자와 관련해서 가지고 또 우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당장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현물·현금출자 비율보다는 현금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정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정부 쪽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안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운용할 거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대형 수주 부분, 그러니까 폴란드 건뿐만 아니고 원전이나 이런 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금융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부분 이렇게 균형 있게 늘어난 부분을 활용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 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 증액은 특정한 업종이나 기업이나 이런 것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납입자본금 규모가 수권자본금의 거의 100%에 다 찬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 결국 중소·중견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자본금 증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건 관련해서 지금 현재 1차 금융계약, 이행 계약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123억 불이 계약이 됐고 그중에 100억 불을 금융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수출입은행하고 무보가 반반씩 나누는 것, 50억 불씩 하는 것은 이미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 저쪽에서 요청이 있을 때 돈이 나가니까.

그 나머지 2차분이 문제입니다. 남은 게 MOU 상으로는 한 300억 불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나눠서 얼마나 쪼개서 갈 거냐, 한 번에 갈 거냐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폴란드 정부가 그 와중에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앞선 정부에서 했던 사업을 다 폐지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진행 과정에서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협상을 하는 과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 이미 보증이 얼마가 나갔다 그랬지요, 100억 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계약을 100억 불 체결하고, 그러면 우리는 얼마 정도의 돈이 나갔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100억 불을 우리가 폴란드 정부 측에 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요. 아직 실제로 그것을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영교 위원 집행할 돈이 없다 이건가요, 지

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100억 불까지는 저희들이 한도 내에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100억 불까지 하면 98% 쏜다 이런 얘기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닙니다. 98.5% 얘기는, 현재 법에서 지금 저희들이 증액을 하려는 것은 주식회사의 수권자본금입니다, 법정자본금. 어디까지 최고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느냐 한도를 법에서 설정을 한 거고요.

98.5%를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정부가 납입을 한 것, 정부나 주주가 납입한 금액이 지금 15조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는 말씀이고. 그것과 방금 말씀하신 폴란드 여신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데……

다만 아까 100억 불까지는, 그러니까 수은 입장에서 50억 불입니다. 이 계약까지는 현재 자본금 규모를 가지고 동일인여신한도를 위반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서영교 위원 현재 가능하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현재는 가능한데 추가로 계약을 하려면, 금융지원을 더 하려면 지금 자본금을 늘리지 않으면 현재 자본금하에서는 동일인여신한도 부분에 걸려서 지원하는 데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걸려서 애로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폴란드하고 계약이 될지는 아직 봐야지 되는 거라는 거잖아요, 정부가 바뀌면서 기존에 했던 것도 그대로 될지 또 한 번 더 정리가 필요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 계약할 것 한번 더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하나만 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서 지금 1개 사업은 한 27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지만 그것은 금융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조건하에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부가,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 그것은 당장 조건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계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2차 계약 중에 진전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2차 계약 중에 진전이 됐

고 1차 계약은 어떻든 돼서 돈이 나가야 하고, 그러나 아직 완전 확정인지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봐야 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1차 계약은 서로 사인을 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것을 뒤집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영교 위원 뒤집는 건 어려우나 두들겨 보고 가야지요. 폴란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두들겨 봐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약상으로 그렇습니다.

○서영교 위원 어떻든 오늘 우리는 수은법을 개정해서 한도를 좀 올리자라고 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서 갑니다.

그런데 말로는 폴란드 무기계약이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급한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잘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아까 했어요.

그러나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폴란드 정부가 바뀌었고, 반대 입장인 정부로 바뀌었고. 그러면 돌다리는 두들겨 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돌다리 두들겨 가는 것들도 살펴야지 되는 것이고, 갑자기 먹다 체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충분히 우리가 합의가 됐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수은 자본금 전체의, 1차 계약, 2차 계약 가면 다 해서 얼마 정도가 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1차에 한 6조, 2차에 한 6조. 그런 정도 맞습니까, 지불보증을 해 주는 부분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1차의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50억 불이니까 대략 6조 정도가 지금 나가게 되는 거고요. 2차는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00억 불 정도, 1차 했던 수준 정도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보랑 수은이 반반을 하게 되면 그런 정도까지도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 모두 다에게 한 번씩 두들겨 보는 것이 필요하고, 수은이 갖고 있는 전체 자본의 양도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려 나가는데 그게 폴란드로 그리고 무기계약으로 또 어떻든 이런 곳으로……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유동수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두들겨 봐야지 되고 철저히 잘 봐야지 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또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얼마만큼, 한 15년 거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만큼의 이익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한화라는 회사가 하는 건데 회사도 한 회사 정도인 것 같고, 이랬을 때 과연 나라는 얼마나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줘야지 될 거라는 생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정도 한도도 늘려서 사업도 일으키고 또 지불보증도 해 가고, 그렇지만 받아 오는 것, 이익 내는 것 이런 것에 대해 계산기도 두들겨서 갖다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은 관련한 보증이나 대출 과정에서 꼭 폴란드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다른 사업들도 많고 그쪽에도 많은 사업을 일으켜 줘야 되고, 지금 경제가 사실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바닥에서는 난리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이 사업은 멀리 가서 언제 돌아올지도 봐야 되고 우리에게 무엇이 좋아질지도, 우리나라 사업자들이 얼마큼 연결되는지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사업이 일어나는 이런 일에 투자해 나가는 기재부의 그림이 주어져야 되는데 ‘어떻든 한도 늘리는 것이 급합니다’ 이러면 그때 맞춰서 법안을 갖고 오고…… 전체 그림 속에서 지금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약 소리 나고 억 소리 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함께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그림도 그려서 가지고 오고, 이것은 어떤 이익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오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유동수 잠깐만요, 그 전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여기 한국수출입은행 경영기획본부장님 와 계시지요?

○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 예.

○소위원장 유동수 수출입은행 현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지금 바로 주세요, 그러면.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영 위원 차관님, 지금 폴란드와 어디까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LOI, MOU, MOA, NDA, 어떤 협정까지 체결이 돼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총 400억 불 규모에 대해서는 MOU가 체결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니까 무기 판매하는 규모로는 123억 불을 실제 이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400억 불 중에서 123억 불은 실제 이행계약이 체결돼 있고요, 나머지 300억 불 부분은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금융계약과 관련해서는, 123억 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불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것은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300억 불 남아 있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융조건들이, 아마 금융계약도 따라서 협의가 될 걸로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아니, 이 문제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양해각서를 국가 간 정상들이 체결한 것은 수도 없습니다. 100건 체결되면 MOA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은 10건도 채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방산 수출해서 마진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마진율까지는 저희들이, 기업들 그거다 보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업종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래도 이렇게 정부에서 재정으로 할 것이나, 자본금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채권 발행이나 자체 차입을 하는 거나 이런 논의도 필요하잖아요, 정부에서 결정도 해야 될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김주영 위원 그런데 실제 이렇게 수출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 오히려 적자 수출도 때로는 전략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런데 제가 앞으로 있을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나서 다음에 MOA까지 지금 체결되지는 않은 거지 않

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400억 불 정도 규모의 MOU에서 123억 불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OA가 아니고 아예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납품을,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미 납품이 시작됐습니다. 대금도 받고 있고요.

○김주영 위원 123억 불에 대해서만 그렇고 나머지 300억 불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김주영 위원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 당장 그렇게 절박한 부분들, 기업이 막 그냥 망할 것 같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노동자들이 그냥 해고가 되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이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너무 압박해서,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공감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건하고 사실 무관하기는 하지만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부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하루에 이자가 100억이에요. 1년이면 이자가 3조 원이 나갑니다, 3조 원. 3조 원이 나가면, 그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면 여기에 투자할 돈들은 얼마든지 재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의 세금 감면이라든지, 작년에 세수 결손이 60조 가까이 났지요? 올해 세금 깎아 주는 게 20조 또 감세 정책들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도대체 그런 적자 나는 공기업들을 방치해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된다.

수출입은행이 지금 급한 게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지금 숨넘어가는 기업들이 있고 중간배당까지, 정말 사상 유례없는 중간배당까지 받도록 하는 이런 것은 기재부가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정말 책임감이 떨어진다고, 이 말씀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책들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다 훨씬 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작년에 2조를 언제 증자했지요, 몇 월에?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작년 3월에 했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작년 3월에 2조 증자할 때 굉장히 급해서 했을 것 같아요, LH 주식으로 2조 증자할 때 보면. 그러면 이 건은 그때부터 굉장히 시급성이 요구된 거잖아요. 작년 3월에 2조 증자하면서 이미 14조 7700억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15조가 실링이었고, 수권자본금이.

맞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그러니까 팔러시(policy)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기재부가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전혀 없다. 2조 증자하면서 우리 상임위하고 논의를 하고 ‘거의 목에 찹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그때도 폴란드하고 이런 수출계약들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월이면 거의 1년간 기재부 뭐 하셨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수출입은행에서 오셨는데 제가 수출입은행의 매니지먼트 규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규정을. 수출입은행이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부 규정을 달라고 그랬더니 별로 없어요. 크게 없어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어서 저한테 보고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규정을 달라고 그랬냐 하면 수출입은행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무기수출 회사들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접근해 나가는가를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폴란드 정부가 바뀌고 한 곳에 너무 많이..... 한 기업에, 한 나라에 너무 많이 보증을 하니까 그 위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기관이 수출입은행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따져 봤는지 이런 것 알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매니지먼트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거기까지 연구해서 하기는 사실 복잡합니다.

지금 차관님이나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이러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은행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법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이 정도로 심도 있게 리스크를 검토했고 이게 충분히 우리가 수용가능한 위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그러니까 지금 50억 불에 대해서 25억 불 대출해 줬고 25억 불 보증했고 무보가 50억 불 보증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 122억 불 중에서 20%는 폴란드가 부담하도록 했고 우리가 80% 부담하기로 해서 한 100억 불 정도 되는데 100억 불 중에 수은이 25억 불 대출해 줬고 25억 불은 보증으로 같음하고 무보가 50억 불 보증하고 이렇게 1차 계약을 했던 말이지요. 그러한 과정에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분석들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별로 오지는 않아요, 너무 중요한 정보여서 안 줬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동일인여신한도 규정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시행령으로 기업군은 50%, 개별 기업이나 개별 개인에 대해서는 40%로 돼 있잖아요. 이게 급하면 이 시행령 규정을 좀 키우든지, 정부 측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두 번째, 과거에도 예외로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외로 한 게 몇 건 있어요. 대우 관련한 거라든지 이라크 원전 관련해서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들을 가지고도 저는 가능하지 않냐. 지금 한화·대우조선 합병 관련한 거하고 UAE의 바라카원전, 대우조선, 현중, 삼중 이런 걸 좀 예외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국회가 이걸 안 해 줘서 못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반대로 ‘정부가 안 해서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충분히 예외조항도 있고 시행령으로 동일인한도 폭을 확대해도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은행들이 신디케이트론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 봐야 됩니다. 한국의 민간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40조나 되고 지금 4대 은행은 거의 당기순이익 15조, 16조 나는 그러한 기업들인데 지금까지 부동산담보대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보증에 의한 대출이라든지 아무 리스크테이킹(risktaking)도 안 하면서 이런 데에 적극적 참여를 안 해 줘요. 저는 오히려 이러한 데에 수출입은행과 함께 민간 은행도 보증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리스크를 헤지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지난번 국감 때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한국의 정책금융이 740조에 달하는 버블을 키워 왔다, 정책금융을 어떻게든 소프트 랜딩시킬 책임들이 있다, 특히 기재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지금 수출입은행 30조는…… 지금 산업은행이 30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수출 강국이지만 산업은행의 규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수권자본금 규모가 같이 간다는 건 저로서는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30조를 해 달라는 게 꼭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위해서 자본금을 맞추는, 그러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데 어떤 특정 기업을 위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수출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움시티라든지 과거에 큰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수출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인내 수출인가, 그걸 뭐라 했습니까? 인내자본들이 필요한 쪽으로 우리가 수출이 이동하니까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키워 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전체 수권자본 대비 납입자본이 지금 거의 차 가지고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꼭 필요한 데에 보증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키우는 건, 확대해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는 거 저도 인정하는데 마치 어떤 특정 기업을 두고 거꾸로 계산해서 ‘30조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성걸 위원** 지금 법 개정안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숫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여러 요인들을 사실상 분석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정자본금이 15조라고 했을 때 먼저 분석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현재 98%에 이르는 납입자본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또 관련되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무역금융이 올해 전체 몇백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지금 공급 기준으로 355조를……

○**류성걸 위원** 그래서 무역금융 전체의 역할을 봤을 때 무공과 또 수은과 EXIM의 경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무역 지원기관들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히 무공과 EXIM이 50 대 50이다 이렇게 했는데 50 대 50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30 대 70이 맞는 건지 또 70 대 30이 맞는 건지 40 대 60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왜 그런 이야기 하나 하면 지금 현재 무공하고의 관계에서, 또 14조 7700억, 14조 8000억을 다 납입자본금에서 소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분석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을 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법정자본금이라고 해 갖고 전부 다, 납입자본금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거 같으면 법정자본금 15조에서 한 50조, 60조로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주는 시그널하고 그다음에 금액만 많이 해 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지금 현재 전체 소진율을 보면 98%에 이르기 때문에 시급하다라는 건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그 규모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 또 외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1개가 한 국가에 또는 한 프로젝트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64쪽에 금융지원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또 65쪽에 관련되는 비교를 해 놔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최대는 박진 의원님이 50조를 했고 25조, 30조, 35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냥 툭 던져 갖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라든지 또 현물출자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현금출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추경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추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현금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분석적으로 좀 정리된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EXIM에서 나오셨는데 누구시지요? 아까 어느

본부장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 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정리된 게 있나요, 시나리오별로? 예를 들어서 무공과의 역할 분담에 관련해서 50 대 50이든지 30 대 70 이든지 60 대 40이든지 이렇게 해 갖고 정리한 게 있나요, 혹시?

○**한국수출입은행경영기획본부장 김형준**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왜냐하면 오늘 정해야 돼요. 나중에 아니고 지금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얼마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의결을 해야 돼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료가 있나요? 이게 지금 수습조를 검토하는데 최소한 관련되는 근거 자료라든지 또는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라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사항을 가지고 분석이라든지 이렇게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논의를 합시다.

○**소위원장 유동수**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영 위원** 차관님, 지금 수출입은행의 현행 자본금이 15조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50조까지 돼 있는데 30조 원으로 정부는 거의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수출입은행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재무적, 구조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정부에서 다 이렇게, 정부출연금으로 되지 않으면 지금 사실 15조밖에 안 되는 데서 굉장히 부담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분석한 자료들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러니까 결국은 15조가 30조가 되면 자본금이 15조가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만 개정한다고 자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자본을 출자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게 늘어난 만큼, 실제로 납입자본금이 늘어나는 만큼 결국은 여신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여신이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건전성은 관리를 해 나가겠다, 한 번에 올린다는 취지는 아니니까요.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분석된 게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은 갑자기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재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요.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어차피 수출입은행은 BIS 비율을 지켜야 되는 은행이기 때문에 결국, 자본과 여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BIS 비율이 한 12~13% 됩니다만 그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가 이루어지고 여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검토한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이 사안도 워낙 중대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도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들이라든지 또 중간에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국회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정부나 수출입은행에서 관련된 자료를 충실히 보고하는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추후에라도……

○**소위원장 유동수** 추후에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출 위원** 우리가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의결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아쉬움이 있는 게요, 한번 보시지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에 보면 17조의5(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여기 보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이때 자기자본은 필로 해석합니까? 그걸 수권자본금으로……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닙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납입자본금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실제 납입자본금 플러스 이익잉여금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지요. 그렇게 회계학적으로 얘기하는 자기자본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권자본금을 늘린다고 그래서 정부가 15조를 더해서 만약에 30조가 추가로 증가되지 않으면 동일차주 한도는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수출입은행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민간 은행하고 굉장히 다른 점이지만 수출입은행이 지금 자본금이 14조 7700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잉여금이 2조에 불과합니다.

지금 우리가 47기입니다. 47기를 하는 동안 이번에 넣은 2조까지 포함해서 14조 7700억인데 2조의 잉여금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배당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출입은행이 기본적으로 설립의 목적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 이해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신한은행 검토해 보니까 자본금이 10조에 불과합니다. 잉여금이 22조예요. 아마 신한은행이 수출입은행보다 늦게 생겼을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건 제가 그냥 추측건대 첫째로는 공공기관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부실이 굉장히 컸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금융이고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부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나간 거잖아요. 여기 지금 배당률로 봐도 신한은행 배당률이 훨씬 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시중은행들이 리스크데이킹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자본금만 증액해서, 이것도 제가 보기로…… 차관님, 15조 증액을 이게 현금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현재 정부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당장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당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 민간 은행들하고 이거 리스크 같이 나누는 것 연구를 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소위원장 유동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저희들이 이 부분……

○류성걸 위원 지금 이 자료, 62쪽 자료하고 똑같은 자료인데 이 밑에 수출 전망, 수출기여도, BIS 자기자본비율 포함해서 2022년하고 2030년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시지요.

누가 해 줄 겁니까?

○기획재정부대외경제국장 민경설 기재부 대외국장 민경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와 관련해서, 수출 규모와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30년까지 매년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율로 저희들은 전망을 해서 2030년 기준 1조 달러 달성 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했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무역협회라든지 주요한 연구기관들도 상당히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어서 기재부만의 전망은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험가중자산과 관련되는 측면은, 이게 수출이 증가되는 거와 관련해서 수출입은행이 수출기여도라는 것을 보통, 저희들이 보기에 과거 20년도에 12.8%를 했는데 앞으로도 수출기여도가 이렇게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수출기여도를 12.8%를 유지할 했고요.

자본적정성은 2022년 말에 13.38%의 BIS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차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 등에 대해서는 과거 평균성향인 순이익 5000억 원, 또 배당성향 40% 정도 유지되는 차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2030년 기준해서 저희들이 전망했을 때는 납입자본금이 대략 30.3조 원 수준으로 되는 것을 전망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이면 수출입은행에 대해서도 현재 15조 원인데 2030년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30조 원 수준까지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류성걸 위원 여기 위험가중자산 어떻게 계산했어요?

○소위원장 유동수 거꾸로 나온 거지요, 거꾸로. 그러니까 납입자본금에서 BIS 비율로 거꾸로……

○류성걸 위원 BIS를 거꾸로 계산해 가지고……

○소위원장 유동수 예, 나누기 BIS 비율로 하면 나옵니다.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영 위원 납입자본금을 50조로 늘리든지 30조로 늘리든지 지금 BIS 비율을 2020년 말과 동일하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자본을 어떻게 확충을 합니까?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결국은 수권자본금이 늘어나면 현금이든 현물이든 정부가 출자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이 일정 부분 쌓이는 부분이 있고, 그게 자기자본이 늘어나는……

○김주영 위원 그런데 이익잉여금은 사실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65쪽에 있는 것을 보면 정부출연금(재정예산)을 8.5조 투입하는 것과 또 수은에서 채권 발행 등 자체 차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BIS 비율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수익이 계속 늘어난다든지 뭔가 해야 되잖아요, BIS 비율을 맞추려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동안 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차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차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BIS 비율이 한 13% 이상은 되어야지 차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손실이 났던 때가 있거나 아니면 BIS 비율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에 상당한 출자를 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15조 원의 수권자본금을 채워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권자본금을 이렇게 올려 주시면 BIS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어느 정도 스케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 출자를 할 겁니다.

○김주영 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달랑 이것을 줬는데 이걸 봐서는 BIS 비율을 어떻게 맞추겠다는 그런 계획은 사실 전혀 없어요.

지금 돌린 여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BIS 비율을 맞추겠다는 그런 계획도 없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한 나라에 몰빵했을 때 리스크테이킹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계획조차도 지금 없잖아요, 그냥 우선 늘려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수출입은행의 존폐 문제하고도 걸려 있다고 보여요. 리스크테이킹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국가가 또 보증을 해 준다든지, 그러면 또 공적자금이 들어갈 거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BIS 비율을 수출입은행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한 계획들도, 러프하게라도 기본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배로 키워야 꼭 방산 수출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규모를 조금 줄여서 의결을 한다든지 해서 의결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테이킹 방안을 꼭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유동수 차관님, 정부 측에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죽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간략간략하게 중복되는 부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권자본금이 늘어나면 BIS 비율을 어떻게 맞출 거고 출자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뭔가 계획을 딱 가지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 7년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30조 원으로 수권자본금을 올려 주신다고 한다면 한 해에 한 이삼조 정도 부분을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지금 저희들이 추정했습니다만 여신이 늘어나는 부분과 이익이 생기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과거 경험 추세로 봐서는 BIS 비율을 13~14%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금을 늘려 달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폴란드 건으로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이 유가 제기되기는 합니다만 정부로서는 그게 유일한 이유거나 중요한 이유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무역금융을 늘리기 위해서도 지금 자본금이 늘어나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폴란드 건에 집중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2차 계약이 어떻게 협상이 되고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민간 은행과 어떻게든 연계를 해서 리스크를 조금씩 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일인여신한도를 올려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과거에 필요할 때 여신한도를 일괄적으로 올렸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올렸다가 다시 40%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한군데 모여 가지고 나중에 손실이 한번 터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를 승인하거나 시행령에서 한도를 올리는 부분은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된다는 게 저희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권자본금을 조금 올려 주시면 순차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리스크 부분이 집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덜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런데 정부 측 자료를 보니까……

차관님, 여기 보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어떤 자료를……

○소위원장 유동수 현물출자 문제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보시면, 지금 15조 증자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10조는 현물출자, 5조는 현금, 그런데 현금도 24년도에는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것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추경을 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계획을 짤 수는 없는 상황이라, 내년부터는 반영하겠다……

○소위원장 유동수 추경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건 또 다른 문제라서……

○소위원장 유동수 그다음에 이것 하나는 부탁하고 싶어요. 현물출자를 할 때 정부가 현물출자를 하지 산업은행을 통해서, 산업은행 증자 때 써먹은 출자금액을, 산업은행이 그 주식을 여기다 다시 출자하게끔 하는 것들은 막아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렇게 하겠습

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다시 건어 가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아, 지금 출자된 것을……

○소위원장 유동수 예, 바꿔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그 부분은 돌아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지금 정부가 대기업들 순환출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지금 자본금 하나를 가지고 두 번 써먹는 거잖아요. 아니, 산업은행 증자하는데 현물로 주고 산업은행은 이 현물 가지고 있다가 수출입은행 증자하는 데 써먹고 그러면 한 돈인데, 정부로 보면 한 돈인데 산업은행 증자할 때 한 번 써먹고 결론적으로 보면 수출입은행 증자할 때 써먹고 그런 꼴이 되잖아요. 제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정부에서 오랫동안 순환출자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제발 그런 일은 좀 없도록 하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만약 그런 부분 있으면 주식의 교환을 통해서라도 시정조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말씀하십시오.

○김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출자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수지 전망, 예상 전망이 없어요. 앞으로 무기를 팔든지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서 연도별로 수지 전망이 지금 전혀 예상되지를 않아요, 단순히 자본금만 늘리는 부분만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가 안 됐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급하다고 하니까 오늘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뭔가가, 앞으로 수출입은행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부가 출자를 하든지 은행한테 해정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을 한다면 수출입은행도 앞으로 전망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순환출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에 순환출자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부가 순환출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 아시지요? 정부에서 출연해 놓고 그 기업이 다시 또 공기업들 몇 번씩 이렇게 순환출자하는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정말 정부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알겠습니다.

순환출자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물출자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산업은행을 통하는 부분은 사실 좀 예외적인 케이스고요.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부분은 어차피 법에 허용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의 순환출자를 그것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적은 돈으로 지배력을 높이지 마라 이런 취지인 데 반해서 정부가 현물출자하는 부분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

○소위원장 유동수 차관님, 그렇기 때문에 정책 금융이 오버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그런 마인드 때문에 한국의 정책금융이…… GDP 성장률 50%밖에 안 되는데, 2013년에서 2023년까지 1인당 GDP 50%밖에 성장 안 했는데 정책금융은 2.5배 성장했어요. 그래서 지금 740조의 버블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차관님 그만두고 아마 언젠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지금이 피크 코리아라면 나중에 이 정책금융을 국가가 감당을 못 할 겁니다.

지금 정책금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각 공공기관마다 특별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금융시장에서 왜 이렇게 채권 조달이 됩니까? ‘정부가 막아 줄까’라는 시장의 확신 때문에 그렇잖아요. 언젠가 정부가 그걸 못 막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오지 않으리라고 정말 가슴을 졸이면서 예상을 하지만 그때가 오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정책금융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이런 것들을 기재부가 사전에 다 관리해서 가져와야 할 얘기들을 위원님들이 대신 걱정을 해 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 본부장님 오셨는데 위험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자본금 증자로 인해서 특정 국가, 특정

산업의 위험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수권자본금 증자액이 지금 현재 15조인데 한 25조 정도로 하자, 법안 발의해 주신 양기대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35조 안을 내셨지요?

○양기대 위원 예.

○소위원장 유동수 그랬는데 양기대 위원님도 아까 25조 안에 대해서 흔쾌히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5조를 소위의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정부 측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위원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셨으니까 정부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유동수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총 4건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안건의 자구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제1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석전문위원 등 위원회 직원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 주 영 류 성 결 박 대 출 서 영 교
양 기 대 유 동 수 이 수 진

○청가 위원(3인)

김 영 선 송 언 석 윤 영 덕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송 주 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김 병 환
국제경제관리관 최 지 영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진	명
국	고	국	장			임	형	철
공	공	정	책	국	장	강	영	규
대	외	경	제	국	장	민	경	설
정	책	기	획	관		장	문	선
국	유	재	산	심	의	관	윤	석
통	계	청	차	장		최	연	호
한	국	수	출	입	은	행	김	형
경	영	기	획	본	부	장		준